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11월 13일

나. 발 의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장종연)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12. 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제6조)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의 특별회계 입법형식으로 정비
 -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 정비
 - 별지 제1호서식(납입고지서) 개정 및 별지 제2호서식(독촉장)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 조례의 기금 운용 관련 조항을 특별회계 입법형식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항으로 분리하여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납입의 고지 규정과 별지 납입고지서 서식을 개정하고 현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인 독촉장은 삭제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4. 5. 24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제9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동법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동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됨으로써 존속기한 연장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동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2 호
----------	--------

제출연월일: 2018. 11.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12.31.자로 만료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 그 밖에 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의 특별회계 입법형식에 맞춰 조문 정비

1)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 정비

2) 별지서식(납입고지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5.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